

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9. 17.

기획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달서구청장(기획전략과장)
- 발의일자: 2025. 9. 3.(수)
- 회부일자: 2025. 9. 3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(2025. 9. 17.)

2. 개정이유

-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규제혁신추진의 체계화를 위한 구조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 변경(안 제명)
 -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⇒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
-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6조)
- 규제의 재검토 규정 신설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조제3항, 제7조, 제8조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」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5. 7. 21. ~ 8. 11.) 결과: 의견 없음.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규제개혁추진의 체계화를 위한 구조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은 규제의 신설·운영 전 과정을 합리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으며, 본 조례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를 우리 구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는 위임 조례의 성격을 띠고 있음.
- 주요내용으로
 - 조례 제명을 정부의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규제정책의 흐름에 따라 “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”로 변경하였음.
 - 안 제6조는 법 제7조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 - 안 제7조는 법 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·규칙을 제·개정하는 경우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·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과 제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규제개혁추진의 체계화를 위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됨.
- 다만, 법 제3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규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, 상위 법령인 법 제8조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법령등에 5년 이내로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한 것으로 “존속시켜야 할

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.” 고 강행규정으로 의무를 부여하였음.

- 이에 반해 안 제7조는 “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·규칙에 규정할 수 있다.” 고 임의규정을 두었음. 이는 상위법령의 강행규정을 조례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위법령과 모순·저촉되어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됨.
-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도 그 조례·규칙에서 임의로 재검토키한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규제일몰제 취지를 훼손하게 됨. 따라서 “규정할 수 있다.” 고 명시된 조문안을 상위법령인 법 취지에 맞게 “규정하여야 한다.” 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 중 “그 조례·규칙에 규정할 수 있다.”를 “그 조례·규칙에 규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규제는 그렇지 않다.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</u></p> <p>제4조(규제의 등록 및 공표) ① 구청장은 소 관 규제의 명칭·내 용·근거·처리기관 등을 <u>제7조에</u>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규 제개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</u></p> <p>제4조(규제의 등록 및 공표) ① ----- ----- ----- -- <u>제9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6조(규제영향분석서)</u></p> <p>① <u>구청장은 입법안 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규제영 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.</u></p> <p>1. <u>규제의 신설·강화 의 필요성</u></p> <p>2. <u>규제 관련 일반 현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정안과 같음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6조 (개정안과 같음)</p>

황

3. 규제 신설·강화에
따른 갈등 상황 및
대책

4. 규제 신설·강화에
필요한 행정기구·
인력·예산 및 그
확보방안

5. 그 밖의 관련 참고
자료

② 구청장은 「대구
광역시달서구 자치법
규의 입법예고에 관
한 조례」 제2조에
따른 입법예고를 할
때에는 입법예고문과
함께 제1항에 따른
규제영향분석서를 주
민에게 공표하여야
한다.

③ 입법예고 후 제출
된 의견은 반영 여부
를 검토하여 규제영
향분석서에 반영하
고, 의견을 제출한 사
람에게 그 처리 결과
를 알려야 한다. 다

만, 단순 건의나 처리
결과가 필요하지 아
니한 사항에 대해서
는 그러하지 아니한
다.

<신 설>

제7조(규제의 재검토)
조례·규칙을 제·개
정하는 경우에는 그
입법안에 등록된 규
제 또는 신설되는 규
제에 대하여 5년 이
내의 범위에서 재검
토기한을 설정하여
그 조례·규칙에 규
정할 수 있다.

제7조(규제의 재검토)
조례·규칙을 제·개
정하는 경우에는 그
입법안에 등록된 규
제 또는 신설되는 규
제에 대하여 5년 이
내의 범위에서 재검
토기한을 설정하여
그 조례·규칙에 규정
하여야 한다. 다만, 존
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
유가 있는 규제는 그렇
지 않다.

제6조 ~ 제9조 (생
략)

제8조 ~ 제11조 (현행
제6조부터 제9조까지
와 같음)

제8조 ~ 제11조 (개정
안과 같음)

제10조(위원회 회의) ①
~ ④ (생 략)
⑤ 위원회는 제7조
각 호의 업무수행을
위하여 관계 공무원,
이해관계인 및 관련

제12조(위원회 회의) ①
~ ④ (현행과 같음)
⑤ ----- 제9조 --

제12조 (개정안과 같음)
⑤ (개정안과 같음)

<p>전문가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, 관련 자료 제출 요청, 현지 조사 등의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
<p><u>제11조</u> ~ <u>제13조</u> (생 략)</p>	<p><u>제13조</u> ~ <u>제15조</u> (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 지와 같음)</p>	<p>제13조 ~ 제15조 (개정 안과 같음)</p>